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465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2월 03일

발 의 자: 김용호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영철, 김용일,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지, 남창진,
민병주, 박성연, 박영한,
박칠성, 박환희, 서상열,
송경택, 송도호, 옥재은,
이경숙, 이봉준, 이상욱,
이영실, 이종태, 이희원,
장태용, 최민규, 한 신,
홍국표 의원(34명)

1. 제안이유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해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실증사업에 참여한 기업에게 실증설비 설치 등에 따른 하수도점용료를 서울시 자체 방침으로 면제해오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물산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하수도점용료 감면기준 및 산정기준을 새로이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점용의 경우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의 점용료를 부과토록 함.(안 별표4제5호)
- 나. 서울특별시장이 필요에 따라 타 기관과 협력하여 물재생센터에서 실증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점용의 경우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의 점용료를 부과토록 함.(안 별표4제6호)

다. 안 별표4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점용료 감면 산정기준을 최초 3년은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100분의 8로 함.(안 별표4비고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별지,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4〉

하수도점용료 산정기준(제28조 관련)

(365일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와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0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따른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5.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6. 시장의 필요에 따라 타 기관과 협약하여 수행하는 실증사업에 따른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7.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8

※ 비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 계산 예 >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
 $100(\text{만원}) \times (6/100) \times (183/365) = 3(\text{만원})$

2. 제5호 및 제6호의 산정기준 적용 기간은 점용을 위한 설비 등의 설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최대 3년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제7호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하수도점용료 산정기준(제28조 관련) (365일 기준)		<별표 4> 하수도점용료 산정기준(제28조 관련) (365일 기준)	
구 분	산정기준	구 분	산정기준
1. 도로, 철도, 궤도와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6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0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0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따른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5. <u>「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점용</u>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신설>	<신설>	6. <u>시장의 필요에 따라 타 기관과 협약하여 수행하는 실증사업에 따른 점용</u>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5.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8	7. ----- -----	(현행과 같음)
※ 비고		※ 비고	

현행	개정안
<p>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p> <p>< 계산 예 >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 $100(\text{만원}) \times (6/100) \times (183/365) = 3(\text{만원})$</p>	<p>1</p> <p>< 계산 예 > (현행과 같음)</p>
<p><신설></p>	<p>2. 제5호 및 제6호의 산정기준 적용 기간은 점용을 위한 설비 등의 설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최대 3년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제7호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p>